

#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(안)에 대한 의견서 취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. 28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. 28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2. 2. 4.(제9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의견서 채택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개발과장 김윤성)

### 가. 제안이유

- 자동차,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의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를 절약하고,
-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신청이 있어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구평동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
- 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 조서

구분	도면표 시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비고
신설	(17)	폐기물처리시설	일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시설	사하구 구평동 427-1번지 일원	9,522.0	

- 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4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5. 심 사 결 과 : 의견서 채택

붙임 : 의견서 1부.

-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(안)에 대한 -  
의견서

1. 도시계획시설 개요

- 가. 시설명 : 폐기물처리시설
- 나. 위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22-1번지 일원
- 다. 용도지역 : 일반공업지역, 항만시설보호지구
- 라. 면적 : 9,522.0㎡
- 마. 시설내역 : 폐유정제시설 및 소각시설

2. 청취안에 대한 의견

- 도시계획시설 대상지는 현재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 및 주변일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토지용도의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
-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은 지역주민 정서에 민감한 사항이므로 인근지역 주민여론의 충분한 수렴과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, 또한 시설 결정 후 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2002. 2. .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